

췌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□ 세부유형 : 췌장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원인상병(진단명),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이력(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, 투여량, 주기 등) 및 C-펩타이드 검사결과 등 진단소견 기재 -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사실을 기재
2. 검사자료	[필수 자료] - 혈액(혈장 또는 혈청) 포도당 검사결과지 : 포도당 농도가 140mg/dL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- 혈액 C-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-펩타이드/크레아티닌 검사결과지 • 혈액 C-펩타이드 검사 : 위 포도당 검사와 동일 검체(혈액)로 검사 • 단회뇨 C-펩타이드/크레아티닌 검사 : 위 포도당 검사를 위한 채혈과 같은 날 채취한 소변(단회뇨)으로 검사 ※ 신규진단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, 재판정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1회 검사 시행 ※ 고혈당 응급상태(당뇨병성케톤산증, 고혈당혼수 등)인 경우는 최소 2주 이상 혈당 조절을 충분히 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함 [선택 자료] - 자가항체* 검사결과지 : 기 시행된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가능 * GAD, IA-2, 아연수송체8, 인슐린 자가항체 등 ※ 자가항체 검사 2종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 6개월 치료기간 경과 전 진단 가능
3. 진료기록지	- 최근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: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여부, 인슐린 용량,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※ 진단명, 증상상, 병력, 치료내역, 인슐린처방 및 장애상태 등에 대한 기재 필요 - 수술기록지 : 전체췌장절제술 또는 췌장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※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(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)
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,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셔야 합니다.	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	
-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내분비대사분과) 또는 소아청소년과(내분비분과) 전문의 -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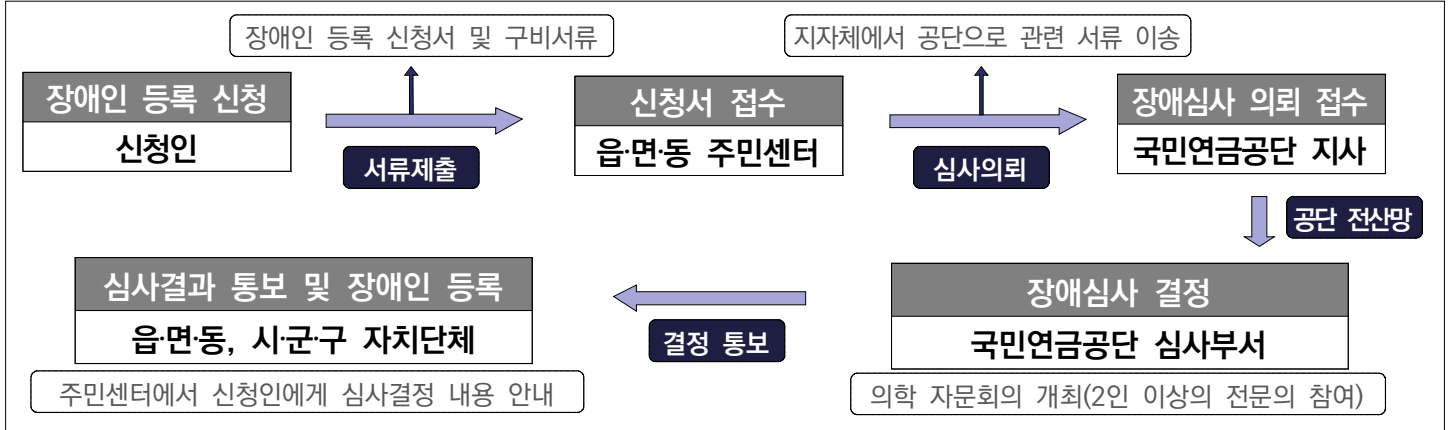
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/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(1) C-펩타이드가 0.6ng/mL 미만 또는 (2) 단회뇨 C-펩타이드/크레아티닌 비율이 0.2nmol/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,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
-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

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
□ 장애인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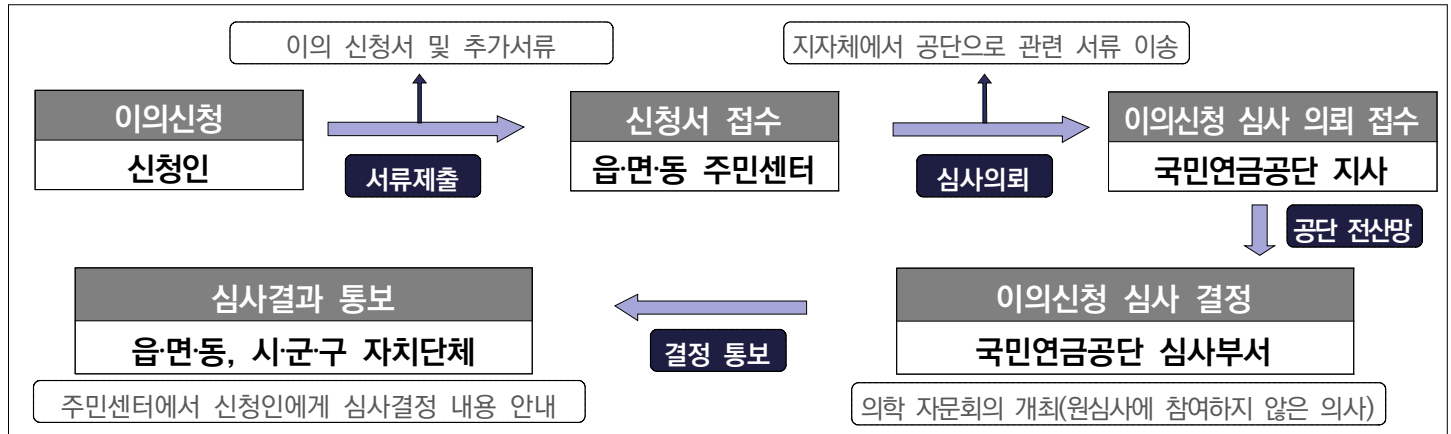
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합니다.


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- 희망 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
□ 이의신청

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.



-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제1항) 합니다.
- ‘이의신청서’ 양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,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.
-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(행정법원)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